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 2026. 9.
제 안 자 : 보건복지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다음 4건의 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함.

건 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상정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9103	한지아의원	2025. 3. 19.	2025. 8. 18.
	2216058	남인순의원	2026. 1. 15.	2026. 3. 10.
	2218715	장종태의원	2026. 4. 29.	2026. 9. 11.
	2219770	백종헌의원	2026. 7. 6.	2026. 9. 11.

나.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6. 9. 15.)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439회국회(정기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26. 9. 17.)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위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은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자의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관련 자료 및 정보의 확보·연계 등에 한계가 있음.

또한, 대형 재난 발생 시 피해자와 유가족뿐만 아니라 구조·복구 등 현장 대응인력까지 상당한 정신적·심리적 후유증을 겪을 수 있으나, 현행 재난 트라우마 지원체계는 단기적인 심리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어 심리지원 대상자의 장기적인 추적·관리 및 지속적인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자료·정보의 연계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 트라우마에 대해서는 심리지원 대상자를 장기적으로 추적·관리할 수 있는 중장기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트라우마센터의 업무에 심리지원 대상자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장기추적 연구를 추가하는 한편, 관련 업무를 수행할 전문인력의 확보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및 제15조의2).

법률 제 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정신건강복지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복지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관리·보유 및 처리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시행과 연계되는 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신청자 등의 인적사항(「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포함한다)

2.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예방, 회복 등 업무에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복지정보시스템과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계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업무를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

1. 「주민등록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정보시스템
2. 「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3.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 관리체계
4.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건강검진자료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복지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정신건강복지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15조의2제2항제8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심리지원 대상자 장기추적 연구

9. 심리지원 대상자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조의2(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정신건강복지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복지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관리·보유 및 처리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시행과 연계되는 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신청자 등의 인적사항(「개인정보 보

	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포함한다) 2.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예방, 회복 등 업무에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복지정보시스템과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계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업무를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 1. 「주민등록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정보시스템 2.「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3.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 관리체계 4.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

	4호에 따른 건강검진자료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복지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정신건강복지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15조의2(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 ① (생 략) ② 국가트라우마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7. (생 략) <신 설>	제15조의2(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7. (현행과 같음) 8. 심리지원 대상자 장기추적

	연구
<신 설>	9. 심리지원 대상자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8. (생 략)	10. (현행 제8호와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⑥ (생 략)	⑦ (현행 제6항과 같음)